

[붙임]

산업재해자 보상기준 개선사항

1. 산업재해로 사망(당연면직) 또는 장해판정으로 인한 공상퇴직(직권면직)자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개선 시행한다.

1) 보 상 : 최대 1.5억(사망 및 장해3급 이상)

2) 세부 내용

구분	현 행		개 선	
	사망	장해3급 이상	사망	장해3급 이상
채용대상 有	채용		채용 또는 1.5억원 보상	
채용대상 無	X		1억원 보상	

* 채용대상 : ①배우자 만40세 이하 또는 ②자녀 만20세 이상 限

* 채용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

2. 위 보상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원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보상금으로 간주한다.

3. 시행시기는 2013.1.1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.

(단,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)